

원격수업 운영 지침

제 정 : 2021. 2. 15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학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학사내규 제45조의 2의 원격수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원격수업”이란 교수-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,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,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및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을 의미한다.

제3조(조직) ① 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등 주요사항의 결정은 본교 “로터스칼리지 운영위원회”에서 한다. 위원장은 로터스칼리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로터스칼리지 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원격수업 운영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원격교육 계획 및 기획에 대한 사항
2. 원격교육 강좌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
3. 원격교육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원격교육의 지원 및 평가·환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

제4조(학점인정) ① 원격수업 교과목의 이수 단위는 학칙 및 학사내규에 준하여,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평점 및 학점제를 기본으로 한다.

② 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최소 15시간으로 하고, 원격수업 1차시는 수업시간 50분으로 구성한다.

③ 원격수업 시간은 강의 콘텐츠 진행(재생)시간,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질의응답, 토론시간, 과제 관련 활동시간 등을 포함하는 전체 교수-학습 활동시간을 의미한다.

④ 1시수 당 강의콘텐츠 진행(재생)시간은 25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

⑤ 실시간 화상교육의 경우 정규 교과목 운영시간을 따른다.

제5조(출석관리) ① 원격수업의 출석 인정기준 및 결석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학사내규를 준용한다.

② 출석관리는 대학 학사운영플랫폼(학습관리시스템) 또는 기타 원격수업용 출석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재난·재해 및 감염병 유행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학기의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.

제6조(성적평가) ① 학생의 성적평가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재난·재해 및 감염병 등 출석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온라인 평가를 실시할 경우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응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소한다.

③ 온라인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 근거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.

제7조(학생 강의평가) ①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 강의평가는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하고, 학기 종료 후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강의평가 결과는 원격수업 질 관리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8조(품질관리) ① 원격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, 매 학기 종료 시기에 교과목 담당교수는 원격수업 교과목의 개발·운영·평가 영역을 분석하여 개선요건을 도출하고 환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원격수업 담당교수는 도출된 개선사항의 반영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환류 상태를 확인하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원격수업 콘텐츠는 3년마다 내용을 전면 개편함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콘텐츠의 전면 개편, 부분 개편 및 폐지 등을 결정한다.

제9조(저작권) ① 본 대학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강의 콘텐츠의 지식재산 소유권은 본 대학에 속한다.

② 본 대학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강의 콘텐츠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강의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, 저작권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발교수에게 있다.

제10조(운영의 제한) ① 국내 타 대학 등과의 학점 교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타 대학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본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 원격수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(전공)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재난·재해 및 감염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기 개시 후 또는 수업운영 중 총장의 승인을 받아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학칙 및 규정을 준용하되,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